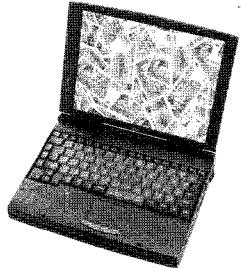


3월 5일부터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이 시행됩니다



농림부는 3월 5일 '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'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금리인하, 상환기간 연장 등 농업인 부채경감 대책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 세부시행지침은 다음과 같다.

I. 중장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및 금리인하

가. 지원대상 자격 요건

▶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및 임업인 포함, 이하같음)

- 다만, 아래와 같이 정책자금을 목적외로 부당 사용한 자는 제외

-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
- 정책자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농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 업종을 변경한 자
-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자
-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자 등

▶ 위의 요건에 추가하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은 총괄 시행지침상의 지원대상 자격 요건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준용

나. 지원대상 자금범위

▶ 지원대상 자금 : 농업인이 2003. 12. 31일 이전에 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중 2004. 1.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중 대출잔액

* 대출잔액 산정시 금리인하는 법시행일 현재, 상환기간 연장은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을 원칙으로 함

- 2003. 12. 31일 이전에 지원대상 사업(자금)을 신청하여 접수된 경우는 실제 대출실행이 2004. 1. 1일 이후에 이루어져도 지원대상 자금으로 인정

▶ 다음의 자금은 지원대상 자금에서 제외

-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 : 회전자금 성격의 단기 운전자금(농·축산경영자금, 농업종합 자금중 운전자금 등)으로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,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

-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 : 회전자금 성

격의 단기 운전자금(농·축산경영자금, 농업 종합자금중 운전자금 등)으로 상환기간이 2년 이하인 자금, 상환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금(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된 농지구입자금 포함)

▶ 지원대상은 2004. 1.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원금

- 다만, 지원대상 정책자금을 법 시행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수연체이자감면 및 연체해소자금(기한내 이자 포함) 지원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연체해소자금을 지원대상에 포함.

다. 지원 및 신청 방법 등

▶ 지원 조건

- 지원금리 : 연 1.5% (단, 기존금리가 연 1.5% 미만일 경우는 기존 금리 적용)
- 상환조건 :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

▶ 지원 방법

- 금리인하는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적용되며, 상환기간 연장은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상자로 선정
-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보유한 지원대상 금액을 신규 대출하여 상환
- 대출금의 재원은 당초 대출금의 재원으로 대출하되, 2004년중 정부에 상환이 예정된 대여금 해당액과 연체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체자금 사용 (협동조합에서 신규 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 차액은 정부가 보전)

* 금번 장기분할 대환으로 인해 상환되는 대출금은 농

특회계·축발기금 등의 대여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농업인의 상환 즉시 재대출 실행

▶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법 시행일~2004. 5. 31일
- 신청대상 :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업인
- 신청서류 : 일선조합 및 중앙회(시·도 및 시·군지부), 읍·면 사무소, 시·군 등에 비치
- *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을단위에도 신청서류 비치
- 신청절차 :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농·축·인삼조합 또는 산림조합에 신청하되, 2개 이상의 사무소(동일계통 협동조합)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농업인이 희망하는 1개 사무소에 일괄 신청 가능

* 마을이장, 영농회장이 마을 구성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가능

라. 사후관리 등 기타

▶ 대출취급사무소는 농가부채대책 지원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부채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관련 기록 원본을 관리

▶ 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한 지도 금융 등을 통해 농업인이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

▶ 지원된 정책자금 또는 부채대책 자금의 부당 사용여부를 상시 점검

▶ 부채대책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대출취급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영농종사 여부 등을 점검

▶ 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자금이 금번 부채대책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위한 대환시에는 대손보전대상임.

▶ 본 지침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출취급 직원은 면책

▶ 명백히 농업인이 대출 중인 중장기 정책자금인 경우에는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지원대상 사업목록(별첨4 참조)에 없어도 지원 가능하며, 비농업인의 경우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지원대상 사업목록에 있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2.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금리인하

가.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

▶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

나. 대상자금 범위

▶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

다. 지원 및 신청 방법 등

▶ 지원 조건

- 지원금리 : 연 3% (당초 6.5%에서 인하)

▶ 지원 방법

- 법시행일 이후부터 일괄 금리 인하 조치 되어, 별도의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

라. 사후관리 등 기타

▶ 금융기관은 추후 지원대상 농업인의 오해가 없도록 본 지원대상의 상환기간은 변동이 없음을 농업인에게 주지

* 상환기간은 당초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

3. 농업경영개선자금 금리인하

가.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

▶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

나. 대상자금 범위

▶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받은 농업경영개선자금 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(2000년 지원분 포함)

다. 지원 및 신청 방법 등

▶ 지원 조건

- 지원금리 : 연 3%(당초 6.5%에서 인하)

▶ 지원 방법

- 법시행일 이후부터 일괄 금리 인하 조치 되어, 별도의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

라. 사후관리 등 기타

▶ 금융기관은 추후 지원대상 농업인의 오해가 없도록 본 지원대상의 상환기간은 변동이 없음을 농업인에게 주지

* 상환기간은 당초 3년거치 7년 상환(또는 2년거치 3년 상환)이므로, 당초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

4.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 연장

가.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

▶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

나. 대상자금 범위

- ▶ 2001년 부채대책에 의거 지원된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 중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

다. 지원 및 신청 방법 등

▶ 지원 조건

- 상환기간 : 3년거치 17년분할 상환(당초 대출일로부터)

▶ 지원 방법

-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기간연장 조치하되, 별도 부채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심사 절차는 생략
- 신청기간 : 법 시행일~2004. 5. 31
- 신청절차 : 일선 조합 및 중앙회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신청자가 작성하여 대출금이 있는 사무소에 신청

*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각각 신청

라. 사후관리 등 기타

- ▶ 2001~2002년에 입보신용대출을 받은 농업인 중 농신보 보증서 담보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대출잔액에 대해 대환 대출 가능
- * 당초의 대출기간은 변동이 없도록 거치기간을 감하여 대환 조치

5. 정상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가.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

- ▶ 중장기농업정책자금 등을 보유한 농업인이 해당 자금을 금번 대책으로 장기분할상환하지 않고 상환하는 농업인

나. 대상자금 범위

- ▶ 중장기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상자금과 같음
 - 2003년에 지원된 경영회생자금과 2001년에 장기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중장기정책자금 중 신규로 약정하지 않고 상환한 자금 포함

다. 지원 및 신청 방법 등

- ▶ 지원 조건 : 상환기일 연장없이 상환하는 원금에 대하여 납부한 1년치 기한내 이자액의 40%를 환급

- ▶ 지원 방법 : 해당 농업인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외의 별도의 신청 및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없음

라. 사후관리 등 기타

- ▶ 금융기관은 정상상환 우대환급이 농업인의 부채 상환을 유도하려는 취지임을 적극 설명

6. 조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가.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

- ▶ 부채대책자금을 1년 이상 조기상환한 농업인

나. 대상자금 범위

- ▶ 2001년 부채대책자금(농업경영개선자금,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, 연대보증피해 특별자금), 2004년에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, 상호금융대체자금(추가 지원분) 및 2004년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상환하기 위해 약정하는 중장기정책자금(2003년 경영회생자금 포함)

- 단,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경우 약정을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는 제외

다. 지원 및 신청 방법 등

▶ 지원 조건 : 해당 대상자금의 약정상 상환기일 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치 이자액의 40%를 환급

▶ 지원 방법 : 해당 농업인의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 외의 별도의 신청 및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 없음

라. 사후관리 등 기타

▶ 금융기관은 조기상환 우대환급이 농업인의 부채 상환을 유도하려는 취지임을 적극 설명

7. 2004년도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 지원

가. 지원대상 자격 요건

▶ 총괄시행지침의 지원대상 자격 요건과 같음

나. 지원대상 자금범위

▶ 지원대상 자금 : 2000. 1. 1일 이후 협동조합에서 신규대출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2003. 12. 31일 현재 대출 잔액

- 다만, 지원대상 자금을 법 시행일 현재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순수연체이자감면 및 연체해소자금(기한내 이자 포함) 지원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연체해소자금을 지원대상 자금에 포함

- 연체해소자금 지원시 연체해소자금 지원이 2003. 12. 31일 현재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해소자금을 2003. 12. 31일 현재 잔액으로 적용

* 농업용 자금의 판단기준 : 대출증서상 농업용으로 기재된 경우를 원칙으로 함. 다만, 대출증서상에 비농업용으로

기재된 자금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

▶ 총 지원 규모 : 7조원

- 지원대상 농업인별 지원규모 : 2003년말 농업용(대출증서 기준) 상호금융 대출잔액에서 1999년말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70%이내

다. 지원 및 신청 방법 등

▶ 지원 조건

- 지원금리 : 연 5%(1년 후취)

* 단, 매년 이자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%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만 1년간 금리 5%를 적용(세부 적용 방식은 별첨 4 참조)

- 상환조건 : 5년후 일시 상환

▶ 지원 방법

-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

- 지원대상 농업인의 지원대상 금액을 신규대출하여 상환

- 대출금의 재원은 당초 대출금의 재원으로대출하되, 연체해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자체자금 사용(협동조합에서 신규대출된 자금의 이자와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간 차액은 정부가 보전)

▶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법 시행일~2004. 5. 31일

- 신청서류 : 일선조합 및 중앙회(시·도 및 시·군지부), 읍·면 사무소, 시·군 등에 비치

- 신청절차 :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농축·인삼조합 또는 산림조합에 신청하되, 2개 이상의 사무소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각 사무소에 각각 신청 C